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미디어운동본부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TEL:734~1046/ FAX:736~5766

<http://www.womenlink.or.kr> • minmedi@chollian.net

문서번호 : 미디어-2008-020

2008. 8. 18.(월)

수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송정책국 국장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08-45호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1. 방송통신위원회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미디어 감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3. 귀 위원회가 입법 예고하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 자료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 ◆ 담당 : 윤정주 사무국장 (02-734-1046)
 - ◆ 별첨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강혜란



<별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I. 기본 입장

-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하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의 등장에 따른 관련 사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 등 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내용임.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시청자들에게 결정적인 불편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미칠 파장도 미미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
- 그러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이후 미디어 환경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폭넓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시청자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지금은 2012년 종료 예정인 아날로그방송 송출이 4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기로,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문제에 앞서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책무 등을 규정하는 문제가 시급함. 그런데 이와 관련한 총체적 설계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의 방송 참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만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주고 있음.

- 더불어 유료방송 간의 형평성 고려나 뉴미디어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참여 기준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봄.

II. 세부 의견

1. 대기업 참여 기준 완화 (3조 미만→10조 미만)

◀ 반대

◀ 근거 :

-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참여 기준은 현행 유지되어야 함.
-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대기업 소유 규제는 사회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단, 지상파 방송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획정하고, '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서비스 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봄.
-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기준 완화는 자사 이해관계를 반영한 여론몰이의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방송 환경 전반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음. 이미 광고 경쟁만으로도 각종 언론의 대기업 눈치 보기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 제한 규제 개선(1/5→1/3)

◀ 유예

◀ 근거 :

- IPTV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봄.

- 케이블TV는 지역성을 고려한 매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IPTV와의 형평성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 현재의 MSO 규모가 IPTV와의 경쟁에서 월등히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디지털 전환 이후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 방송가구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점유 규제 완화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체적인 유·무료 방송에 대한 사회적 설계 속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윤용채널 하한선 완화(70개→50개)

◀ 반대

◀ 근거 :

- 단기적으로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임.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PP들이 종합 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지위를 점하고, 편성 기회 축소에 따른 광고수익 축소로 이어져 콘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짐.
- 결국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